

大學圖書館과 圖書館法 改正方向

韓 相 完

<全南大 文獻情報學科 教授>

1. 대학도서관의 기본적 요소

셰라(Jesse H. Shera)박사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도서관은 다음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싶다. 첫째, 자료의 선정·수집인데 이는 이용자에게 어떤 지적자료를 제공하고 획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정·수집은 자료의 지식본체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지식의 이용과 응용에 깊이 관련되어야만 한다. 둘째, 자료의 조직인데, 이는 자료이용의 극대화와 편리화를 위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정보학은 도서관 전문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도서관의 존재이유인 정보와 지식의 해석과 서비스를 들 수 있다.”(Shera,1983 : 385) 대학도서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근본적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 혹은 활동이란 것은 사실 자동화, 터미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디오디스크, 옵티컬디스크, 콤팩트디스크, 퍼스컴, 즉시전자컴퓨터네이션, 인공위성 등등의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셰라박사의 모델처럼 인간의 정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문헌정보전문직의 목표는 지식과 정보의 해석과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을 때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보다더 확연한 이해를 위하여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 도서관협회의 한 부서인 대학 및 연구도서관 사서연구회(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 사서연구그룹(The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Personnel Study Group)의 위촉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유명한 프로젝트 논문인 “1985년에서 1995년까지 : 다음 10년간의 대학도서관직”(1985 to 1995 : The Next Decade in Academic Librarianship)을 집필한 비이너(Allen B.Veaner)이다. (Veaner, 1985 : 209-229 ; 295-319) 그는 “대학사서의 진정한 업무는 대학교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으로서 이들은 수준높은 학술적인 논문의 발표, 대학계획과 치리에의 넓은 참여, 전문학회와 전문직 단체에의 참여, 교수의 연구에 중개적(中介的) 참여에 의한 공동연구, 서지강좌 프로그램의 보급 등이 그것이다(Veaner, 1985 : 216)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에서 바람직한 도서관법의 개정방향이 무엇일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시해 보

고자 한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대학사서의 질적 향상과, 향상된 질을 소지한 적격자를 제대로 대학사회에서 대우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도서관법에서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두에 두 분 석학의 글을 좀 장황하게 인용했던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학도서관에 관한 법규에 여러가지 사항들 즉 시설, 자료, 인사, 예산 등에 대하여 바람직한 안을 제시하여만 할 것이지만, 전문직 인사의 문제를 소망스럽게 개정하여 이를 법제화할 수만 있다면 다른 여러 요소들은 감히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순조롭게 발전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무릇 모든 조직과 기구의 발전이나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원천은 인적자원인 것이며, 이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발전에서라야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에 전문직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서들이 일하게 되고, 그러한 우수한 인적자원에 의하여 대학도서관이 운영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방향과 틀의 기본을 도서관법은 포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현행 대학도서관에 관련된 법규와 개정시안들을 비판한 후, 다음으로는 대학도서관의 도서관법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대학도서관에 관한 법규 및 개정시안 비판

도서관법 제3조 1)항에 도서관의 구별을 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을 학교도서관에 함께 구분하고 있으며, 제25조와 제26조에는 대학에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사서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6조에는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그리고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음은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다.

우선 도서관법 제3조 1)항의 도서관의 구분중에, 대학도서관을 학교도서관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무리이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및 배치기준이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보면, 사서직원의 자격이 법에 규정된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서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다. 이는 평범한 상식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더욱 명료해지는 논리인바,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을 4년간 전공하여 정사서란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만, 혹은 그외의 자격 취득방법에 의하여 정사서 자격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수준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전문가(professional)로, 전문직 사서로 우대하여, 의학 전문직이나 법률 전문직과 같은 범주에, 혹은 교수직과 동일한 대우와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스스로 혹은 법규상에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도서관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바탕 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요구하여야 당연할 것이다.

도서관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비현실적인 점은 도서관계 현장에서 누차 그 개정을 요구해 왔던 점입니다만, 학생수가 5백인 이하인 때 2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수가 5백인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8백인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는 법규는 너무나 낮은 기준임을 우리는 저간의 체험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규례는 대학설치기준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등인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법이 제대로 틀을 잡는다면 모법의 정신을 살려 자연스럽게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론을 피하려 한다.

3. 대학도서관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방향

대학도서관을 위한 도서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학계나 도서관계 인사들의 의견의 개선이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1976년에 1차 도서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도협월보」 1979년 12월호에는 도서관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제2차 개정안을 싣고 있으며, 3차 시안은 1981년에 도협 사무국에서 조정 성안했고, 제4차 개정안은 1983년에 국회 정기회기에 제안할 목적으로 조정한 안이었으나 그 내용은 1, 2, 3차안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도협의 개정안 내용을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으나, 대학도서관과 관계된 요점은, 대학도서관 이외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기구로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도서관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다는 점과, 대학도서관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여 놓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조문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설치, 시설 및 자료, 직원, 소관부서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는 사서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개정안의 주안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몇몇 인사에 의하여 개진된 바 있는데, 1975년에 김세익교수의 의견이(김세익, 1976: 22-27) 그것이고, 손정표교수의 견해(손정표, 1976: 303-306), 그리고 최창균씨(최창균, 1976: 299-302)등의 의견들이 그것이다. 그중 김세익교수는 개정안에서의 전문사서란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서란 용어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손정표교수는 사서의 구분은 바람직하되 그 명칭을 1급사서, 2급사서 및 3급사서로 나누든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그리고 준사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어 전문사서(1급사서)의 자격기준이 개정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조문의 이해가 잘못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으나, 이는 논외로 하려 한다. 다만 우리의 사서라는 전문직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객관적 평가란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야 올바른 관점이 될 것이란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도서관법이 제정된 지 23년이 경과한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집약함은 물론 시대정황에 맞는 도서관법 개정안만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로서도 우리는 일말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도서관법 개정안은 일단 현재까지 도서관계나 학계의 중론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도서관법 개정안을 중심한 대학도서관계의 의견을 정리했고 여기에 본인의 의견을 첨가하는 선에서 도서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도서관발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정 내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위원회의 명칭을 “정보서비스 및 도서관발전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보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절히 정보를 유통 공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과 개념, 그리고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서 시대를 리드하는 도서관의 현대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2차개정안 제5조(사서의 자격과 양성)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던 사서의 자격기준이 도서관협회에서 조정하여 1981년 6월 10일에 문교부에 제출하였던 3차개정안에는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안에는 사서의 자격기준에 대한 별표의 마련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에서 다루고자 했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즉 전문사서, 정사서, 준사서, 혹은 정사서1급, 정사서2급 및 준사서의 3단계로 자격구분을 하여 전문사서의 자격을 격상시키고, 일생동안 전문직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봉사를 통한 문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만 전문직으로서의 문헌정보직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서란 명칭 문제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사서란 명칭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영어에서의 ‘librarian’, ‘information specialist’ 혹은 ‘information officier’라고 사용하는 용어의 풀이를 굳이 ‘사서’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시대상황과 내용을 고려하여 ‘정보사’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그 자격구분에서의 명칭을 전문정보사, 정보사, 정보사보의 3구분을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직업의 명칭에 1급, 2급 등의 등급 숫자를 쓴다는 것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호봉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며, 전문직 명칭을 숫자와의 조합어로서가 아닌 고유명칭으로 통일 사용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관점에서도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가 이미 써오던 용어를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면 전문사서, 사서, 준사서의 명칭도 무방하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용례는 전문직의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인 의학분야에서 전문의사, 일반의사로 자격구분을 나누듯이 문헌정보학 분야도 이를 원용함은 하등의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명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서의 자격구분을 세분화하여 높여 놓으므로 하여 대학사회와 사회에서의 사서란 전문직의 격을 제대로 갖추고 그 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신분(Status)을 격상시키는데 있어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은 법적 개정조치는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사서의 대우에 관한 것이다. 도서관법 2차개정안 제30조 2)항과, 3차개정안 제27조에서 모두 전문사서(혹은 1급 정사서)에게는 대학의 교수대우를 하는 소위 교수신분(faculty status)을 보장하는 조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정당하며 당연한 법규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2차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2차개정

안 제30조(직원)에는 1)항 대학도서관에는 제5조에 규정된 사서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관장은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전항의 직원중 1급정사서에 대하여는 대학의 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3)항에는 제1)항의 규정 중 직원의 정원과 제2)항에 규정된 1급정사서의 대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개정안이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3차개정안에는 제27조(직원)에 대학도서관에는 교수대우의 전문사서와 사서를 두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대학도서관에서의 전문사서 채용 의무규정과 대우에 따르는 명확한 후속법규정에 대하여 언급을 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과 기관의 근간과 생명은 인사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보았을 때, 파행적으로밖에 발전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국공사립 대학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대학공동체에 진정으로 발현하기를 원한다면 전문사서의 교수신분 확보와 이에 상응한 대우,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삼음으로 하여 생애를 전문직으로 봉사하면서, 전문직 소유자다운 사회 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으로서 생애 승진 계단의 구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문헌정보직의 발전은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지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게 이러한 요소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다듬어져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즉 2차개정안의 내용을 살리되 관장의 자격을 최소한 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보임하고, 전문사서는 대학교원의 승진 절차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여야 될 것이다.

전문사서의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2차개정안의 자격기준 조건들을 더 세분화하여,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전문사서의 자격기준에 정사서로서 문헌정보학 이외 주제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도서관 실무경력이 2~3년 이상이며 이 분야에 관한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하여 인준을 받은 인사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는 2,000년대를 지향한 사서직의 역할은 정보전문가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주제면에서 보다 전문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진단한 이병목박사의 논문이나(이병목, 1985:22), 대학도서관 기능의 중핵적 요소인 정보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길이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인에게 정보연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 논문(한상완, 1985)등을 근거하여 보아도 쉽게 납득되는 도서관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서직의 전문성의 확보와 국가 사회에서의 인정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적절할 시기에 우리 도서관 전문가들이 획득하지 못한다면, 소위 정보사회라는 지식과 정보가 모든 물질이나, 재화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새롭게 다가오는 세 시대의 거대한 조류에서 우리는 아마도 하치않은 직업집단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냉엄하고도 처절한 명제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한다.

< 인용문헌 >

김세익. 1976.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서관 211 : 22—27.
 손정표. 1976.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도협월보 17 : 300—306.
 이병목. 1985. “2,000년대를 지향한 사서직의 역할” 도협회보 26권6호 : 13—23.
 최창균. 1976.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도협월보 17 : 299—302.
 한상완. 1985.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Shera, Jesse H. 1983.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Study of Information: Interdisciplinary Messages*, edited by Fritz Machlup and Una Mansfield, p.385. New York: Wiley.
 Veaner, Allen B. 1985. “1985 to 1995 : The Next Decade in Academic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6 : 209—229 ; 46 : 295—319.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00 서울特別市 中区 會賢洞 1 街 100-177 (社) 韓國圖書館協會
 ☎ (75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한국십진분류법<제 3 판> (제 1 권 본표·제 2 권 상관색인)	20, 000원	비도서자료<이론과 실제>	5, 000원
한국목록규칙<제 3 판>	6, 500원	고서분류목록법(상)	4, 500원
도서관학개론	4, 500원	한국도서관기준	3, 500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4, 500원	선정도서목록(II)	2, 500원
한국목록규칙해설	4, 500원	선정도서목록(IV)	3, 000원
도서관전산화입문	6, 000원	한국도서관통계(1984)	4, 000원